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750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최수진·신성범·한지아

유용원 • 박정하 • 구자근

김소희 · 김예지 · 성일종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주고 있음.

이러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으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그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청년등상시근 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8).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850만원"을 "935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950만원"을 "1천93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 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 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 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③ (생 략)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 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 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 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 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 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가
<u>935</u> 만원
나
1천93만원
②・③ (현행과 같음)
4
<u>2</u>
028년 12월 31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⑤ ~ ⑧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